

장외파생상품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않은 거래 확인서

-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- 투자자는 아래의 **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**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.
-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**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**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.

1. 유의사항

- ①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**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**하셔야 합니다.
- ② 고객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**하나은행은 적합성 원칙*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**
* 적합성 원칙(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) : 소비자의 재산상황, 금융상품 취득·처분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,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
- ③ 고객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**하나은행은 설명의무*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**
* 설명의무(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) :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
- ④ 투자시 **원금 손실이 발생**할 수 있으며, 투자에 따른 **손익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**됩니다.
- ⑤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**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
※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*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·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**적정성 판단 보고서**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.

* 적정성 원칙(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) :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절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

2. 투자자 확인사항

2.1. 고객등급 및 고객등급에 따른 거래가능 상품의 위험등급

고객등급	(고객자필기재)	거래가능 상품의 위험등급	(고객자필기재)
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2.2. 거래희망 상품 및 거래희망 상품의 위험등급

거래희망 상품명	(고객자필기재)	거래희망 상품의 위험등급	(고객자필기재)
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2.3. 계약권유(투자권유) 하지 않음 확인

본인의 거래희망 상품은 **본인에게 적정한 위험등급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**으로서, 본인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본인이 특정한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, 해당 상품의 투자 위험 정도가 본인의 투자목적,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**본인에게 부적절**하므로 하나은행이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,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**부적정성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통하여 경고**를 받았습니다.

본인은 상기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투자권유를 (받지 않았으며) 본인 (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) 본인이 특정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합니다.



※ 참고 : 장외파생상품상담용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

구분		I 단계	II 단계	III 단계
내용		주의	경고	위험
상품예시		이자율스왑 옵션매수	통화선도 통화스왑	주의, 경고 등급의 상품을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
고객등급	A	거래가능	거래불가	거래불가
	B	거래가능	거래가능	거래불가
	C	거래가능	거래가능	거래가능

고객확인

본인은 본 자료를 (수령)하고 자료의 (내용)에 대해 (설명)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일자 년 월 일

고객명		(서명/인)
대리인		(서명/인)

은행확인

- 고객이 기명 날인(또는 서명)한 본 확인서 사본에 하나은행은 기명 날인(또는 서명)을 한 후 이를 고객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. 고객이 기명 날인(또는 서명)한 본 확인서 원본은 하나은행이 보관합니다.

작성일자 년 월 일

주식회사 하나은행	지점/부서명	
담당자 (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)		(서명/인)
영업점장 (파생상품 영업관리자)		(서명/인)

